

제 호		
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		
기관명		
교통안전교육 기관의 장	성명	
	주소	
처분내용		
처분사유		
「도로교통법」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·도경찰청 교통과(면허계)에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시·도경찰청장 직인		
※ 알려드립니다.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		